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보고서

문서번호	건강관리과-16180
결재일자	2015.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이정선	진정희	김혜심	김경희	11/02 이비오
협 조				
	구민고충민원실장		신환창	

민원사항

- 번 호 : 1786
- 상담인명 : 차○○
- 처리기한 : 2015. 10. 31. (등록일자: 2015.10.24.)
- 민원유형 : 시정요구형 (수용불가)
- 제 목 : 아파트건물-금연구역으로 지정 좀 해주세요
- 내 용 : 성동구지역 아파트 건물의 금연구역 지정 요청사항입니다
- 아파트 복도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간접흡연을 하고 있어 불편함

답변내용

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간접흡연의 폐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민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하여 건의하여 주신 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구역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파트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개인 주거공간이어서 안타깝게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국민 건강증진법이 아닌 서울시 자체 방침으로 2007년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를 지정·관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자유 침해, 주민 과반수 찬성, 실효성 확보 곤란 등의 문제로 201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연 아파트를 신규 지정할 방법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님의 지적처럼 아파트에서의 간접 흡연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금연에 대한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님의 소중한 공감가는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
리며, 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처리부서: 건강관리과 ☎2286-7032 주무관 이정선 건강생활팀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김혜심